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출원인 외에 산업재산권 관련 모든 절차를 밟는 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식별번호인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용어를 변경하고, 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를 각각 대리인번호 및 신청인번호로 변경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등 6개의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6. 7. 1. ~ 8. 12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##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

제1조(「특허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고유번호(이하 “출원인코드”라 한다)”를 “「특허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(이하 “특허고객번호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출원인코드가”를 “특허고객번호가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「특허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의3제1항”을 “법 제42조의3제1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출원인코드의”를 “특허고객번호의”로, “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”를 “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제9조제5항 전단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

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제9조의9 전단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아니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출원인코드 [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·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)]”를 “특허고객번호[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·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)]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앞쪽 【수임자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위임자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호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앞쪽 【제출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호”로 하고, 같은 쪽 **【대리인】**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쪽 **【신고대상 대리인(복대리인, 대표자, 서류송달 대표자)】**란 중 “대리인코드(출원인코드)”를 “대리인번호(특허고객번호)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,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5호 및 제6호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,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8호가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앞쪽 **【제출인】**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**【대리인】**란 및 **【등록(변경, 철회)대상 대리인】**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4호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5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,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6호가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앞쪽 **【대리인】**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

같은 쪽 【그 밖의 사항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외의 부분 제1호가목 및 다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기재요령 제1호아목 2)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며, 같은 호의 【제출인】란의 작성 시 유의사항 1)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4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6호가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앞쪽 【구분】란 및 【제출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며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외의 부분 제1호의 표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기재요령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기재요령 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제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

같은 서식 앞쪽 【구분】 란 및 【제출인】 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며, 같은 쪽 【대리인】 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기재요령 외의 부분 제1호의 표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기재요령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5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앞쪽 【제출인】 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 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9호가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 앞쪽 【제출인】 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 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9호가목 중 “출원

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앞쪽 【제출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9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8호가목(5)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13호가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앞쪽 【제출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9호가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 앞쪽 【제출인】란, ( 【인계인】 )란 및 ( 【수계인】 )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

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10호가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 앞쪽 【제출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7호가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 앞쪽 【출원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8호가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4호서식 앞쪽 【출원인】란 및 【발명자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



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6호 중 “출원인 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14호가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【제출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9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 앞쪽 【제출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7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9호서식 앞쪽 【제출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9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

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 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10호가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0호서식 앞쪽 【제출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0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 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6호 중 “출원인 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9호나목(3)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10호가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1호서식 앞쪽 【출원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 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6호 중 “출원인 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2호서식 앞쪽 【제출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

한다.

별지 제22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9호가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 【출원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2호의2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7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3호서식 앞쪽 【제출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8호가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4호서식 앞쪽 【제출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

한다.

별지 제2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9호가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5호서식 앞쪽 【출원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5호가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9호서식 앞쪽 【제출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9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11호가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9호의2서식 앞쪽 【특허(등록)권자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

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호나목, 라목 및 바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4호나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14호나목(2)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15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0호서식 앞쪽 【출원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0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10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0호의2서식 앞쪽 【출원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0호의2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9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1호서식 앞쪽 【청구인】란 및 【피청구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10호가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2호서식 앞쪽 【등록권리자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2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9호가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3호서식 앞쪽 【제출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5호마목(2)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10호가목 중

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4호서식 앞쪽 【청구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10호가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5호서식 앞쪽 【출원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4호나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5호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6호서식 앞쪽 【출원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및 【신고대상 대리인(대표자)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6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호나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4호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5호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고,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7호서식 앞쪽 【출원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및 【신고대상 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7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나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8호서식 앞쪽 【출원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8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호나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4호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5호가목(2) 및 (3)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9호서식 앞쪽 【출원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9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4호나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5호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40호서식 앞쪽 【출원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



호”로 하고, 같은 쪽 **【대리인】**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40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4호나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5호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41호서식 기재요령 제2호다목4)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호 마목3)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41호의2서식 첫 번째 용지 제2기재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용지 제4기재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서식 계속 용지 제3기재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서식 기재요령 제2호다목4)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며, 같은 호 마목3)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47호서식 앞쪽 **【출원인】**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**【대리인】**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47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호나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4호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48호서식 앞쪽 **【출원인】**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**【대리인】**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호”로 하고, 같은 쪽 **【대리인】**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48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호나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4호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49호서식 앞쪽 **【출원인】**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**【대리인】**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49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호나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4호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50호서식 앞쪽 **【출원인】**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**【대리인】**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50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4호나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5호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51호의2서식 첫 번째 용지 제2기재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서식 두 번째 용지 제3기재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52호서식 앞쪽 **【출원인】**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**【대리인】**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호”로 하고, 같은 쪽 **【대리인】**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52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나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57호서식 앞쪽 **【출원인】**란 및 **【발명(고안)자】**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**【대리인】**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57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, 나목 및 같은 호 다목(4)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7호가목 및 나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13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58호서식 앞쪽 **【출원인】**란 및 **【발명자(고안자)】**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**【대리인】**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58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5호 및 제10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59호서식 앞쪽 【제출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59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6호가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제2조(「실용신안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출원인코드[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·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)]”를 “「실용신안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특허법」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(이하 “특허고객번호”라 한다)[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·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)]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  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실용신안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”을 “법 제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앞쪽 【출원인】란 및 【고안자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3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

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6호 및 제14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제3조(「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출원인코드의”를 “특허고객번호의”로, “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”를 “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제14조제6항 본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출원인코드의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의”로, “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”를 “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

다.

제22조 전단 중 “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”를 “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”로, “출원인코드 정보변경신고서”를 “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고서”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제8호 중 “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”를 “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”로, “출원인코드를”을 “특허고객번호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1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앞쪽 【제출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방법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방법 제9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앞쪽 【제출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3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방법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

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방법 제8호나목5)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방법 제13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앞쪽 【출원인】란 및 【창작자】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3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방법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방법 제9호나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방법 제13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방법 제19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앞쪽 【출원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방법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방법 제6호가목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방법 제7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앞쪽 【출원인】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

호”로 하고, 같은 쪽 **【대리인】**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방법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방법 제8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 앞쪽 **【이의신청인】**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**【대리인】**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방법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방법 제10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 앞쪽 **【제출인】**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**【대리인】**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방법 제3호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0호서식 앞쪽 **【출원인】**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**【대리인】**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



한다.

별지 제20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방법 제2호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방법 제6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제4조(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 
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후단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, “신청인코드”를 “신청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앞쪽 【수임자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위임자】란 중 “신청인코드”를 “신청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호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 중 “신청인코드”를 각각 “신청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앞쪽 【제출인】란 중 “신청인코드”를 “신청인번호”로 하고, 【대리인】란 및 【신고대상 대리인(복대리인)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 중 “신청인코드”를 각각 “신청인번호”로,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

가목, 나목 및 라목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5호가목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6호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8호 중 “신청인코드”를 “신청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앞쪽 【신청인】란 및 【창작자】란 중 “신청인코드”를 각각 “신청인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호가목, 같은 호 나목 1)·2)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“신청인코드”를 각각 “신청인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1)·2) 외의 부분 중 “신청인코드”를 각각 “신청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, 나목 및 라목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10호 중 “신청인코드”를 “신청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앞쪽 【제출인】란 중 “신청인코드”를 “신청인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, 같은 호 나목 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2) 중 “신청인코드”를 각각 “신청인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방법 제3호가목, 나목 및 라목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방법 제7호라목 중 “신청인코드”를 “신청인번호”로,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

재방법 제9호 중 “신청인코드”를 “신청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앞쪽 【제출인】란 중 “신청인코드”를 “신청인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호가목, 같은 호 나목 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2) 중 “신청인코드”를 각각 “신청인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2호가목, 나목 및 라목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6호 중 “신청인코드”를 “신청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앞쪽 【제출인】란 중 “신청인코드”를 “신청인번호”로 하고, 같은 쪽 【대리인】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가목, 같은 호 나목 1)부터 3)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2) 중 “신청인코드”를 각각 “신청인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, 나목 및 라목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8호 중 “신청인코드”를 “신청인번호”로 한다.

제5조(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」의 개정)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앞쪽 [신청인]란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

하고, 같은 쪽 ([대리인])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  
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하고, 같은 기재요령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8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“특허고객번호”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앞쪽 ([대리인])란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“대리인번호”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2호 중 “출원인코드”를 각각 “특허고객번호”로,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하며, 같은 기재요령 제3호 중 “대리인코드”를 각각 “대리인번호”로 한다.

제6조(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의 개정)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4항제8호 중 “출원인코드정보변경”을 “특허고객번호정보변경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.

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

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.

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#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2조(서류에 의한 절차) 법령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, 제출인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 및 <u>고유번호(이하 “출원인코드”라 한다)</u>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(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)</u>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서류에 의한 절차) -----</p>	<p>제2조(서류에 의한 절차) -----</p>	<p>제2조(서류에 의한 절차) -----</p>	<p>제2조(서류에 의한 절차) -----</p>
<p>제4조(서류의 사용어 등)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국어로 적어야 한다.</p> <p>1. 「<u>특허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</p>	<p>제4조(서류의 사용어 등) ① -----</p>	<p>제4조(서류의 사용어 등) ① -----</p>	<p>제4조(서류의 사용어 등) ① -----</p>	<p>제4조(서류의 사용어 등) ① -----</p>
<p>1. 「<u>특허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</p>	<p>1. 법 제42조의3제1항 ----- -----</p>	<p>1. 법 제42조의3제1항 ----- -----</p>	<p>1. 법 제42조의3제1항 ----- -----</p>	<p>1. 법 제42조의3제1항 ----- -----</p>

다)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명세서 및 도면

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9조(출원인코드의 부여등) ① (생략)

②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·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)·서명·인감·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면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(경정)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·2. 삭제

④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

-----  
-----  
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특허고객번호의 -----  
-----  
-----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-----  
-----.

③ 특허고객번호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----- 특허고객번호 -----  
-----  
-----.

④ 특허고객번호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특허고객번호 -----

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⑤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가 이종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「주민등록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에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별지 제5호의2서식에 갈음할 수

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특허고객번호-----  
-----  
----- 특허고객번호-----  
-----.

⑥ -----  
-----  
----- 특허고객번호-----  
----- 특허  
고객번호 -----  
----- 특허  
고객번호-----  
----- 특허고객  
번호 ----- 특허고객번호-----  
-----  
-----



있다.

⑦ 제6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「전자정부법」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출원인코드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9조의3(전자문서 이용신고) 법 제28조의3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출원인코드의 출원인 정보와

--.

⑦ ----- 특허고객번호

-----  
-----  
-----

특허고객번호 -----

-----.

⑧ -----

-----  
-----  
-----

----- 특허고객번호-----

-----.

제9조의3(전자문서 이용신고) --

-----  
-----  
-----

-----  
-----  
-----

-----.

----- 특허고객번호-----

일치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제9조의9(행정구역 등의 변경)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출원인코드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(법인의 경우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)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.

제11조(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)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조·제90조·제92조의3·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,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·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(이하 “출원서류 등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

1. 2. (생략)

3.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9(행정구역 등의 변경) --

-----

----- 특허고객번호-----

-----

-----.

-- 특허고객번호-----

-----

-----

-----.

제11조(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) ① 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 아니한다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 또는 출원인코드 [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·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)]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

4. ~ 11. (생략)

12.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 (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),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,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,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

13. ~ 20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12조(특허번호등의 표시) 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을 한 후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서류·건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특허번호 또는 특허출원번호,

-----  
----- 특허고객번호[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·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)]--  
-----

4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특허고객번호 -----

----- 특허고객번호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3. ~ 20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특허번호등의 표시) ① 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특허권자 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·출원인코드[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·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)]를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특허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·견본 기타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·출원인코드[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·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)]를 표시하여야 한다.

-----  
-----특  
허고객번호-특허고객번호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특  
허고객번호-특허고객번호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)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서류·견본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번호,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·출원인코드[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·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)]를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·견본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</p>	<p>제2조(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실용신안법</u>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<u>특허법</u>」 제28조의2에 따른 <u>고유번호</u>(이하 “<u>특허고객번호</u>”라 한다)[<u>특허고객번호</u>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·주소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)]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 
그 당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  
에는 명칭)·출원인코드[출원인  
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·주  
소(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 
영업소의 소재지)]를 표시하여  
야 한다.

제3조(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 
제출) ① 「실용신안법」(이하  
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에  
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  
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  
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 
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 
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- ② ~ ④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특허고객번호-특  
허고객번호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3조(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 
제출) ① 법 제8조제1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

1. ~ 10. (생략)

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,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), 서명 또는 인감,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(경정)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⑤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특허  
고객번호의 -----  
-----  
----- 특허고객번호 부  
여신청서-----  
-----.

③ 특허고객번호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특허고객번호  
호 -----  
-----.

④ 특허고객번호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특허  
고객번호 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특허고객번호-----  
-----



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「주민등록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에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.

⑦ 제6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

----- 특허고객번호  
호-----

-----  
----- 특허고객번호

-----  
-----

⑥ -----  
-----

-----  
----- 특허고객

번호-----  
-----

----- 특허고객  
번호 -----

-----  
----- 특허고객번호

의 -----  
-----

----- 특허고객번호 부여  
신청서 -- 특허고객번호의 ----

-----  
-----

⑦ ----- 특허고객번호  
-----

-----

우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「전자정부법」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출원인코드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16조(전자문서 이용신고)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출원인코드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제22조(행정구역 등의 변경)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

-----  
----- 특허고객번호  
호 -----  
-----.

⑧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특허고객번호 -----  
-----  
-----.

제16조(전자문서 이용신고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----- 특허고객번호 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행정구역 등의 변경) -----  
-----

우에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또는 「특허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신고서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(법인인 경우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)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.

제24조(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)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37조, 제64조, 제68조, 제69조,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, 재심사의 청구,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서류·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(이하 이 조에서 “출원서류 등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.

-----  
 -----  
 -----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-----  
 -----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고서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특허고객번호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.

제24조(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) ①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.





를 말하며, 법인인 경우에는 그  
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  
한다)를 표시하여야 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.



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
일부개정령안  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특허청서울사무소) ① ~ ③ (생략) ④ 출원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7. (생략) 8. 출원인 등록, <u>출원인코드정보</u> <u>변경</u> , 전자문서이용등록, 포괄 위임등록서류의 접수 및 방식 심사 9. (생략) ⑤ (생략)	제18조(특허청서울사무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----- <u>특허고객번호정</u> <u>보변경</u> ----- ----- ----- 9.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